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을 촉진하고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가 1천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발전설비용량을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기판매사업자를 거쳐 기업 등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력산업 관련 융복합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사업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21년 1월 12일

국 무 총 리 정 세 군

국 무 위 원
고용노동부
장 이 재 갑

●대통령령 제31387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0 제1호가목 본문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1년 동안 특수건강진단 실시 대상 근로자가 1만명을 넘는 경우에는 1만명마다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를 1명씩 추가한다.

대통령령 제30256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유효기간) ① 제9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9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전에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건강검진 기관은 2021년 1월 18일에 그 지정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월 17일까지 해당 기관을 다시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2023년 2월 1일에 그 지정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없는 시·군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에서 특수건강진단 대상인 야간 작업 근로자의 원거리 진단의 부담을 줄이고 해당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특례제도의 유효기간을 2021년 1월 17일에서 2023년 1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고용노동부장관이 2021년 1월 17일까지 그 연장 대상 특수건강진단기관을 다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21년 1월 12일

국 무 총 리 정 세 군

국 무 위 원
고용노동부 장 이 재 갑
관

●대통령령 제3138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61조에 따른 간병이 필요한지 판단하기 위한 진찰

제125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5조제14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를 추가함으로써 업무상 재해로부터 소프트웨어기술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